자료번호
제 호

01-77

[redacted]

한미관계 역사적 고찰

국토통일원

1969. 12

국 토 통 일 원

차 례

1. 서 론 ---- 1

2. 미국의 은국개국 시도 (1866 ~ 1894 년) ---- 3

가. Sherman 호 사건 ---- 3

나. Shufeldt 제독과 수호조약체결 ---- 5

다. 조약체결직후의 양국관계 ---- 7

3. 청일, 노일전쟁기의 한미관계 (1894 ~ 1905) ---- 10

가. 청일전쟁과 미국의 중립 ---- 10

나. 노일전쟁과 미국의 반로친일 ---- 11

4. 양차세계대전기의 한미관계 (1905 ~ 1945 년) ---- 15

가. 한일합방과 민족자결주의 ---- 15

나. 2 차대전과 한국독립문제 ---- 16

다. 38 도선 설정 경위 ---- 18

5. 미·소 분할점령과 한국동란 (1945 년 ~ 1953 년) ---- 20

가. 신탁통치안 ---- 20

나. 미·소협상의 결렬 ---- 21

다. 대한민국 단독수립 ---- 22

라. 미군철수 ····· 24
마. 한국동란과 미국 ····· 25

6. 한국동란이후의 한미관계 (1953 ~ 현재) ····· 29
가. 한미방위조약 ····· 29
나. 한·미·일의 삼각관계 ····· 30
다. 월남파병 ····· 32
라. 한미행정협정 ····· 35

7. 한미관계의 분석 ····· 38
가. 미국의 신아시아정책 ····· 38
나. 비미국화 정책과 한국의 안보 ····· 40

8. 결 어 ····· 44

9. 참고자료 ····· 47

1. 서 론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의 기조는 Morgenthau가 지적했듯이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이었다. 2차세계대전까지 미국은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세력균형이 붕괴된 후에야 비로서 개입했고 세력균형의 복구작업이 일단 끝나면 다시 고립주의와 중립주의노선으로 되돌아오곤 했던 것이다. 그것이 2차대전이후부터는 대공전략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지속을 위해 사전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타입의 외교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바로 이 미국외교정책의 근본원칙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패턴」에도 작용했던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접촉을 하게 된 1866년의 Sherman호 사건이래 100여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미국은 처음 80년 한반도에서 전개된 국제적 권력분규에서 초연한 중립적태도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대한정책이 없었다. 대한관(対韓観)도 「먼 곳에 있는 작은 나라」로서의 정도였으며 임기응변적이면서도 실리적 동기에서 대한정책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이후 엄밀히 말해서 한국동란이후 양국관계의 양상이 호혜평등원칙과 주권존중이라는 원칙하에 동맹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아시아의 세력균형정책에서 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한국의 주권을 옹호할 만한 구실을 찾지 못했을 뿐아니라 미국이 주요시한 중국의 문호개방정책과 미국의 식민지, 비율빈의 영토보존을 위해 1905년

Taft－桂협정에서 일제의 한국침략까지 묵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동란이래부터의 미국의 적극적 대한정책은 중공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국력강화조치로서 대치하려는 즉 일본을 아시아 반공전략상의 병참기지와 극동의 친미안전세력으로 유지하려는 대일정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적극적 대한정책도 월남전쟁의 종결을 재촉하는 미국국민의 여론의 격화와 더불어 새로운 아시아 doctrin이 나오게 되어 2차전이후의 직접적인 개입방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경제, 기술원조의 수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미국의 신대아시아정책으로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동남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감축론 내지 철수론까지 토의하게 된 오늘 북괴의 남침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미국의 대한정책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정책에 관한 심각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관망한다는 관점에서 과거의 한미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해 본다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미국의 한국개국의 시도(1866~1894)

가. Sherman호 사건 : 19세기에 서구제국은 식민지 획득전에 급급했으나 독립국가로서 역사가 짧았을 뿐 아니라 미대륙전체를 확보하는 문제, 남북전쟁등으로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1898년 미서전쟁의 결과 처음으로 해외영토(비율빈, 구암)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커졌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주로 통상목적인 것이었다.

미국이 최초로 통상 또는 경제적 이해와 관련해서 한국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1834년 5월 13일 Edmund Roberts라는 미국인이 극동지역을 탐험한 결과 미국이 일본과 통상관계를 수립한다면 한국과의 통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던 때부터였다.

그후 11년이 경과한 1845년 2월 15일 한일양국간의 통상을 위한 사절단과견사의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었으나 부결되고 만적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난후 미국은 다시 한번 조선의 개국을 꾀했다. 1866년 8월 미국인 W. B. Preston 해운상사의 선박인 Sherman호가 대동강입구까지 왔다가 지방관헌과 촌민들에 의해 소각되고 선원이 살해를 당한 사건이 생겼다.

한미양국간의 관계에서 처음 일어난 불상사로서 미국정부는 오히려 이 사건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6년후인 1882년 Shufeldt 제독에 의한 한미수교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6세기에 구주와 아시아의 항로가 개통된 이래 약 300년간은 구라파의 상인, 선교사, 외교관, 탐험가들이 아주(亜州) 각국을 찾아 들었으나 조선만은 예외였다. 당시 조선은 국제세력에 너무나 어두웠던 이유로 쇄국정책을 고집했던 것이다. 따라서 서양인은 조선을 「세외왕국」 또는 「은국」이라고 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 왕릉에 많은 황금이 묻혀있다는 소문이 나 있어 탐험가들의 호기심을 사게 되었고 지리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육교적 위치를 차지하여 「은국」으로서 오래 견디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

Sherman호 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은 아직도 미국과 한국이 같지 않으나 우리측으로 볼 때 대원군 집정하에서의 불란서 선교사 학살사건의 보복행위로 원정을 나온 불측 함대와의 충격전직후 관민이 긴장하던 때라 Sherman호의 조선항해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실 Sherman호는 필요이상으로 무장을 했으며 우리측의 철거요구에 위협적인 태도로 나왔을 뿐 아니라 약탈행위까지 하자 이에 분개한 주민들이 배를 불살라버린 것이다. 미국역사가 가운데도 Sherman호 사건은 전적으로 한국측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시인하는 사람도 있다.

이 Sherman호 사건에 관한 소식은 그 다음해 1867년에 비로소 미국에 알려졌다. 1866년 불란서 선교사 살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연안을 항해하던 불란서 함대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받은 미국무장관 William H.Seward는 Sherman호 사건과 불신부(仏神父) 살해사건의 진상 해명을 얻기 위한 공동원정을 주미불

공사에게 제안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과의 통상관계를 트고 했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1870년 4월 미국은 다시 한번 한미통상의 길을 트기 위한 방안으로 주청미공사 Frederick F. Low에게 아시아함대를 이끌고 한국을 개국시키라고 훈령을 내렸다. Low공사는 강화도 근해에 이르렀으나 결국 광성진 근처에서 양국간의 총격전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나. Shufeldt제독과 한미수호조약 체결 : 미국은 그후 당분간 잠잠했으나 한편 조선내에서는 쇄국정책의 고수자였던 대원군이 민비파에게 정권을 빼앗기자 1876년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로서 개국정책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 정보에 힘입어 1878년 4월 California주 출신 A.A.Sargent상원의원은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조선과의 통상조약을 교섭할 사절단 파견을 제안했으나 그 결의안 역시 부결되었다.

그러나 2년후 Ticonderoga호로 아프리카지역과 인도양을 거쳐 일본 장기(長崎)에 도착한 Robert W. Shufeldt제독에 의해 일본의 알선으로 한국과의 통상을 수립하고자 2차에 걸친 시도가 있었다. 첫째로, 그는 동경주재 미국공사를 통해 일본의 정상향 외무대신의 협조를 얻어 한국에 접근하려 했고 2차로는 1880년 5월 직접 부산으로 와서 부산주재 일본 영사를 통해서 협상을 제안한 서한을 왕에게 전달했으나 조선왕은 당시 일본을 통한 서양인의 접근을 경고한 청국의 충고에 의해 개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장기로 돌아간 Shufeldt 제독에게 한미교섭의 중개역을 자청하고 나왔다. 이렇게 한미수호관계 수립에 자진해 나온 이홍장의 동기는 일본을 통해 한미수교가 이루어질 때의 일본의 대조선영향력의 확장을 우려했으며 청국이 대로관계에 있어 해양확장을 계획하였던 때이니만큼 Shufeldt의 원조를 얻으려는데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은국개국」의 교섭이 청국의 주선으로 1882년 봄에 시작되었다. 청국의 이홍장이 조선대표로서 협의에 임했는데 이때 그는 한미수호조약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삽입하기를 고집했으나 Shufeldt제독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조선구위중국 속방···」의 조항을 삭제케 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한미조약이 중국의 승인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조선왕국이 서한으로 미국대통령에게 직접 보내기로 타협을 보았다. 이와같이 해서 한국대표 김윤식은 미국측과 한번도 직접 교섭도 못한채 이홍장과 Shufeldt가 조약을 초안했고 1882년 5월 22일 한국 제물포에서 마도대와 정제독 두 중국관리가 동석한 가운데 우리측 대표 신본, 김홍집과 미측대표 Shufeldt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한미수호조약의 주요내용은 외교와 영사 대표의 교환, 3개항의 개항, 치외법권의 인정등이었다.

이 한미수호조약은 일본과의 perry조약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미해군의 큰 외교적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약은 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국가와 체결된 조약이었고 그후의

영·불·독등 서양제국과의 수호조약의 모델이 되었다.

1883년 조약이 비준되자 Foute가 주한미국 공사로 부임됨으로서 한·미 양국간의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된 셈이다.

다. 수호조약직후의 한미관계 : Foute 공사는 취임후 조선사절의 방미를 적극 주선하여 한미양국간의 우의를 공고히 하였으며 그의 친절 성실하고 우호적 태도는 고종으로 하여금 그를 누구보다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사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의 지식과 충고를 청하게 되었고 Foute의 공정무사한 언행을 높이 평가하여 마침내는 미국인 정치 군사고문의 초빙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고종의 대미의존정책에 감명한 Foute공사는 계속 본국정부와 연락을 취했으나 1년이 넘도록 확답을 얻지 못한채 이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후임 Joulke공사도 전임 공사에 못지 않게 조선국왕과 위정자들에게 자주정신을 고취하고 독립국가의 면목을 갖추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미국정부에 계속 고문파견을 요청했으나 뒤늦게 불가능하다는 회답도 받았고 고종은 이에 크게 실망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이때만 해도 한반도의 존재가치를 인식 못했으며 열강제국의 세력다툼에 개입되기를 꺼린 나머지 취해진 무관심한 중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국간의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은 (1) 한국과 청국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위치와 (2)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세력다툼에 대한 미국의 위치를 분명히 한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은 가능하면 양국간의 정치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편 중국이 한미수호조약협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고 한국을 속국으로 대했으나 미국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독립국가로 대하였던 예도 있었다. 즉 1885년 중국대표 원세개(袁世凱)와 미국공사사이에 상당한 충돌이 끝내 1887년 중국정부가 미국공사의 소환을 정식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미국이 이에 응하였지만 그후 1888년 1월 청국이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향미를 방해하였을 때는 이에 개의치 않고 단호한 태도로 「미국과의 수호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대표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 공사를 접수했던 것이다.

1889년 James G. Blaine 미국무장관은 서울주재 미공사에게 "한국의 국왕이 국내문제에 대해 중국과 특종의 봉건적 총독관계"에 있다는데는 의심할바 없으나 대외관계에는 그럴수가 없다는 지령을 보낸바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의 한·청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식태도는 청국의 한반도에 대한 특수위치는 인정해도 조약상 미국이 갖는 권리는 중국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일·로·영·청의 분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불간섭주의였다. 수호조약 제1조에 "타국이 불공경멸하는 경우 서로 알려서 도우고 조정하여 우의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수차에 걸친 원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지위가 계속되기

를 원하면서도 한국과 제3국과의 분규에 개입되기를 끝까지 회피하고 중도적 입장을 지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식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무시하는 미국측의 초연한 태도는 미국독립후 영불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미국독립전쟁에 참전까지 하였고 미국독립에 큰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우호조약까지 체결했던 불란서에 대한 미국 초대대통령 George Washington의 정책이 중립주의였음을 상기해 볼때 미국다운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청·일·노·일전쟁기의 한미관계 (1894 ~ 1905)

가. 청일전쟁과 미국의 중립 : 1894년 한반도를 둘러싼 청일 분규가 절정에 달했다. 동학란을 계기로 양국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고종은 외국사신들에게 평화주선 역할을 요청했을 때 미국공사 Sill을 포함한 열국사신들이 일·청양국군의 철수를 권고했으나 조정의 내정개혁이 있기 전에는 철병을 못하겠다고 거부하였다. 따라서 고종은 그 다음 수단으로 주미공사 이승수를 통해 한미조약상의 우호적 조정역할의 이행을 미국무장관에게 요청하였다. 중국의 이홍장도 1894년 7월 열국으로 하여금 단결하여 한반도로부터 일군의 철수를 강행하는데 이니시에티브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미국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훈령을 서울주재 미공사에게 보냈고 "일본이 약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인접국가에 부당한 전쟁의 참화를 입힌다면 미국대통령은 몹시 실망할 것"이라는 온건한 통고만을 동경주재 미공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중립정책으로 말미암아 1894년 7월 8일 청일간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공동개입을 제의해 왔을 때도 "호의적 간섭"이라 해도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다. 동년 10월 12일 영국정부가 다시 한번 미국과 다른 서구제국에게 공동개입을 제안했으나 역시 불응하고 말았다. 물론 공동간섭을 시도한 열국은 제각기 한국문제해결책의 관점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속셈이 달랐던 것이다. 결국 상해, 역을 전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 즉 청일교전중에도 통상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열국이 성공한 셈이었다.

1894년 4월17일 일본 하관에서 구화조약을 맺었을 때 미국은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일본을 위해 Dulles를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Dulles의 주선하에 맺어진 하관조약에서는 청일양국이 모두 조선이 독립국임을 승인함으로써 청국의 종주권을 포기하게 하였으나 실은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한국을 합방하려는 길을 튼 셈이 되었다.

강력한 청국을 패배시킨 일본군사력에 감탄한 미국은 이때부터 이미 초기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 일본에 가까히 하려는 태도였다. 청일전쟁이전에도 미국의 대일, 대한정책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는 미국인 군사고문파견을 주저하지 않았으나 조선 고종의 요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 노일전쟁과 미국의 친일반로:

청일전쟁의 결과 청국세력이 한반도에서 거세되자 러시아가 전면에 등장하여 청일분규가 노일분규로 변했다.

일본의 야심을 두려워한 민비일파의 사대당들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게 되자 일본은 1985년 10월8일 민비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때 서울주재 미국공사 Sill은 영·노·불등 외교대표들과 함께 일본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11월21일 Gresham미국무장관은

「미국 거류민과 이권을 보호하고 조선의 내정문제에 대하여 열국 공사와의 공동행위를 피하고 중립을 지키라」는 훈령을 Sill공사에게 보냈다. Sill도 선임자들과 꼭 같이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았음에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분노하여 조선국왕의 간곡한 자문에 응해 수시로 진언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 중립지시에 어긋난다 해서 그는 A.N.Allen으로 교체되고 말았다.

한미수호조약문속에 〃미국이 조선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을 전적으로 믿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금광개발권과 경인철도부설권을 부여했고 미국선교사들을 신뢰한 한국측의 태도는 당시 조선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의 접근을 꾀하던 미국측의 내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에 와 있던 미국인들은 반일의견을 표시하지 말라〃는 훈령에 이어 1897년 11월 19일 「극동지역에서의 서구제국의 이해와 대립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많으나 미국은 중립태도를 지킬 것이며 조선통치자들이 미국을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훈령을 서울주재 미국공사에게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계속 미국을 신뢰하고 1899년 『한국의 주권을 각국이 보장하도록 미국이 제안하기를』요청하였으며 1900년에도 『한국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열국간의 협정을 맺는데 미국이 주선하여 달라』고 호소했으나 미국은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던중 미국의 공개적인 반로친일정책은 대미수입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주에서의 미국의 상업활동이 러시아의 만주진출로 방해

를 받게 된데에 기인되었다. 그리하여 만주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려던 러시아의 태평양상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영·일동맹을 미국은 지지하고 나섰다. 그뿐 아니라 1902년 9월 의주항을 개항하기 위해 한미조약의 개정까지 요구했었으나 한국측이 거절하였다.

1904년 한국과 만주문제로 노일전쟁이 발발되자 한국은 이미 일본의 완전한 지배권내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때 한국의 운명은 미국의 관심밖에 있었다. 노일전쟁이 1년반동안 계속되는 사이에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영국은 불란서의 개입을 적극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 했다. 그 이유는 일본이야말로 미국과 영국의 공동이해를 위해 만주에서 러시아와 대결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05년 7월 미국 육군장관 Taft와 일본수상 계태랑(桂太郎)간의 Taft-桂 협정으로 일본은 미국의 비율빈에 대한 기득권을 존중하고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보호제를 설정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즉 바로 이 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처분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이러한 한일합방의 흥정은 그후 제2차 영일동맹조약(1905년 8월), 제3조와 미국 Theodore Roosevelt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노일구화조약(1905년 9월) 제2조에서 재차 확인되었던 것이다. 미국 Portsmouth에서 조인된 구화조약에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그후 Roosevelt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항해서 한국을 간섭할 수 없다. 그들은 (한국인) 스스로의 방위를 위하여 일격도 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였고 한국은 자주능력이 없으니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호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을 모스코바주재대사로 신임한 대사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4. 양차 세계대전기의 한미관계 (1905~1945)

가. 한일합방과 민족자결주의 :

일본은 미국의 승인하에 계획대로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한국의 정치외교권을 박탈해 버리자 미국은 즉시로 주한공사를 철수하고 이어서 서울의 공사관을 폐쇄하고 영사로 대치시켰다. 그 결과 한미외교관계는 수호조약체결이래 24년만에 한때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고 일본은 예정한대로 1910년 8월29일 한국을 합방하고 말았다.

결국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영미의 이익을 보호한 일본에 한국을 그 대가로 넘겨주면 만주의 문호개방정책이 유지되어 미국의 경제적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오산을 했던 것이다. 노일대결에서 러시아의 세력을 거세한 일본은 마침내 만주개발을 중심으로 미국과 맞서게 되었다. 미·일경쟁은 끝내 2차전으로 발전되어 미국은 결국 한국을 희생시킨 대가로서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폭격을 얻고 만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던 때부터 2차대전 발발시까지 미국과 영국의 세력은 아시아에서 쇄퇴해 갔다. 한편 일본은 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의 세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15년초 일본이 중국정부에 대한 21개 조약요구를 강요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1917년 미국도 참전하게 되자 일본이 독일측에 가담할 것을 우려해서 중국대륙에서의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는 일본의 요구를 1917년 11월 Lausing - 석정(石井) 협

정에서 승인하고 말았다.

1918년 1월 미국의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은 일본 압제하의 한국국민에게는 크게 고무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은 민족자결주의가 한국독립운동가들이 기대하던 미국측의 적극개입정책을 초래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Wilson대통령 개인이 고안해 낸 국제평화를 위한 일반원칙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잠시나마 한국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적측의 영향권에 속하던 지역에만 적용된 종전방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에 힘입어 1919년 3월 1일 역사적 독립운동을 전개시켰고 일본지배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미국의 Wilson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오히려 1919년 4월 14일 미국무성은 주일미국대사에게 서울주재 영사가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다.

나. 2차대전과 한국독립문제 : 2차대전이 발발되자 1941년 7월 이승만 임시정부대표는 Roosevelt 대통령에게 1882년에 체결된 조약국가관계를 회복할 것을 제안했고 동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다시 한번 신임장을 제출했으나 미국무성은 한국의 임시정부승인건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1942년 2월 〃대서양 헌장은 민족자결을 지지하여 이 민족자결은 전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Roosevelt대통령

의 라디오연설은 Wilson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에 못지 않게 한국 민족주의자들에게 서광의 빛을 보여 주었다. 그뿐 아니라 Sumner welles국무차관은 신문기자회견에서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 미국은 전적으로 동정을 한다고 밝혔지만 1943년 미국회에 상정된 한국 임시정부승인 결의안은 위원회단계에서 묵살되고 말았다. 만일 이때 이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San Francisco UN창설회의에 한국도 초청이 되었더라면 38선문제가 달리 해결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2차대전 당시 강대국가의 수뇌급 정상회담이 수차에 걸쳐 소집되었고 전후처리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 중 한국독립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는 1943년 11월 Cairo 회담에서였다. 「한국국민의 노예적 상태를 고려해서 적당한 과정을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Cairo선언은 장개석총통의 주장으로 Roosevelt대통령과 Churchill수상과 합의한후 Stalin의 동의를 얻은 항목이었다. 물론 이 조항은 대일전략의 일부로서 첨부된 것이었다.

그후 1945년 2월4~11일 Roosevelt대통령과 Stalin은 다시 한번 yalta 회담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한 결과 미국의 Roosevelt대통령이 먼저 한국의 신탁통치안을 제의하였고 stalin도 이에 찬성하였다. 「한국은 40년간의 신탁통치에 의한 정치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Roosevelt는 한국의 자치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1945년 7월26일 미·영·중 3개국원수는 potsdam선언을 통

해 일본항복조건과 Cairo선언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8월9일 대일전쟁에 참전한 소련도 포츠담선언원칙을 지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영•중•소 4개국이 꼭 같이 한국독립의 지지태도를 표명한 셈이 되었다.

다. 38선설정경위 : 38선 설정문제는 아직도 의문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분명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측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방성의 정책에 따라 MacArthur장군이 1945년 9월2일 발표한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 38도선이 그어졌다는 것이다.

Truman대통령도 그의 포고록에서 38선이란 일본이 갑자기 항복함으로써 일어난 진공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미국이 제안한 임시조치였음을 밝혔고 stalin이 이미 한국의 신탁통치를 승인한바 있었으므로 소군에 의한 북한점령은 일군무장해제를 위한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2차대전중 국무성보다도 국방성이 외교정책수립에 주요역할을 했다는데에 그러한 과오의 원인이 있다고 해석하는 자도 있다.

반면에 8월26일 이미 개성까지 진주했던 소련군의 남진을 Mac Arthur사령부의 일반명령이라는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막을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점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상작전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을리가 없으며 또한 당시 yalta회담 예비계획서에 의하면 군사점령의 정치적 의의.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점령정책이 갖는 정치적 의의에 미국의 유의했을뿐 아니라 Harriman은 소련과의 합의에 관계없이 남만주까지 군대를 진주시

킬 필요성을 권고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yalta에서나 potsdam에서 한국분단에 관한 사전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찌되었던 한국은 Roosevelt대통령의 개인외교와 Truman을 둘러싼 군인외교의 희생물이 된것 같다.

5. 미·소 분할점령 (1945-1948)

가. 신탁통치안 : 한국은 38도선을 분기선으로 이남에는 Hodge장군지휘하의 미제24군단이, 이북에는 Chistiakov장군 지휘하의 소련군이 각각 점령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의 남한에 대한 송전중지로부터 시작해서 미·소의 대립이 차츰 표면화되었고 따라서 이때 이미 분할점령의 문제점을 예견할수가 있었다.

1945년 12월 모스코바에서 열린 외상회의에서 Byrnes미국무장은 소련의 한국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길은 신탁통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5년기한의 4대국에 의한 한국신탁통치안을 제의하면서 기한은 연장시킬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때 molotov 소련외상은 경제통일, 임시정부 수립등을 토의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신탁통치기한을 5년으로 하자는 제의를 했을때 미국은 이 소련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모스코바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의 중요내용은

(1) 한국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안건토의는 민주적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미·소 양국의 최종결정 이전에 영국, 중국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할것;

(3)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임시 조선정부의 협의를 거쳐 5년 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작성을 위해 미·소·영·중 정부의 공동심의에 붙여야 한다.

(4) 남북한의 항구적 조정을 위해 미·소 양사령부 대표자 회의가 2주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이에 의해 1946년 1월 미·소대표자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측은 38선의 철폐와 양지역의 직각통합을 토의하자고 제의했고 소측에서는 미곡등 남한농산물의 인도·일본인 철수·남한에 대한 송전문제를 토의하려 했기 때문에 격심한 의견의 차이로 결열되고 말았다.

나. 미·소협상의 분열:

한편 모스코바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소집을 제안하여 Hodge 장군도 미국워싱톤의 지시를 구한 결과 공동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나 개인」은 한국인 전체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미·소 쌍방이 다 합의할 수 있는 지도자나 단체야 되므로 공산주의자와 전체주의적인 좌익단체는 제외해야 된다 했다.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Hodge장군은 1946년 2월 14일, 남한민주의원을 창설하여 정치적 범위를 넓혀보려고 했으나 이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우익보수세력이 차지하고 말았다.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으나 쌍방의 견해의 대립은 협의의 대상을 중심으로 주심해지자 이 회의 역시 결렬되었다.

소련은 소련대로 전승국으로서 점령한 지역에 친소정부수립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고 미국 또한 친미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 한반도의 분단이 영구화되지 않을수 없는 정치적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년 5월20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marshall미국무장관과 molotov 소련외상의 알선으로 개최되었었으나 또 실패하고 말았다.

다. 대한민국수립 : 미소공동위원회가 거듭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워싱톤에서 4상회담을 제안했으나 중국과 영국만 수락했을뿐 molotov소련외상은 그러한 회담은 moscow선언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마침내 소련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지친 marshall미국무장관은 한국독립문제를 유엔총회에 제소키로 결정하였다. 1947년 9월23일 한국문제가 유엔의제로 상정되었을때 소련은 1948년초에 미·소 양군은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외부간섭없이 한국인 스스로가 정부를 수립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한국문제는 2차전 전후처리문제이므로 유엔헌장 107조에 의해 유엔은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1947년 11월14일 유엔은 미국이 제안한 한국독립에 관한 결의안을(제112호) 43대0, 기권6(소련과 동구위성국 5국)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의해 9개국의 대표로서 임시한국위원단(UNTOO)를 설치하고 1948년 3월31일 내로 위원단과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협의를 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이 국회는 속히 정부를 수립하여 위원단에 보고하고

수립된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해서 국가방위군을 조직하고 그밖의 군대조직은 해산시키며 군사지휘권과 남북한의 행정권을 인수하여 가능하면 90일내로 점령군의 철수를 위해 점령군당국과 의논하도록 되어 있었다.

1948년 1월12일 임시한국위원단의 첫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소련은 유엔의 그러한 결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38선이북으로 위원단을 받아 들이지도 않았고 대표도 파견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5월10일 갖기로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단독선거실시는 미국의 극동팽창정책의 기지화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한국국내에서도 민족분열을 우려해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사람도 많았다.

5월10일 총선거의 결과 제헌국회가 성립이 되었는데 형식상 의석의 3분지1은 북한 대의원의 의석으로 남겨 두었다. 7월17일 헌법이 공포되고 8월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탄생되자 미군정은 정권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였다.

그리하여 12월12일에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정부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선언하고 점령군의 조속한 철수를 결의했다.

미국정부는 1949년 1월1일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승인했고 한국은 1월19일 유엔가입을 신청했으나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오늘날까지 좌절되어 왔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지배하의 정부를 조직하고 조선민주공화국헌법을 채택했다. 이 북한정권도 1949년

2월9일 유엔가입을 신청했으나 1948년 12월12일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다.

라. 미군철수:

1948년 12월26일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병을 완료했다고 발표되었다. 한편 미국은 동년 5월이전부터 미군철수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 11월20일 한국국회는 미군철수의 연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의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합법화시켰으나 미국은 철병의 계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1947년 5월7일 patteren 미국무차관은 점령비가 막대하며 전략상 한국의 가치가 없으니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marshall 국무장관에게 건의했으며 9월25일에는 통합참모부로 한국에는 군사기지설치라는 견지에서도 전략적가치가 없다고 보고한바 있었다. 마침내 1949년 5월부터 철군을 시작하여 6월29일 완료했고 유엔위원단도 이를 확인했다. 다만 7월1일 발족한 군사고문단 (KMAG)만 남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방어는 공·해군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오산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1950년1월 미국은 한국을 극동방위권에서 제외해 버리고 말았다. 즉 미국은 무계획적이고 임시 응변적인 전시 대한정책으로 38선을 설정해 놓고도 1950년 1월20일 Dean acheson 미국무장관은 전국 기자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방어선은 알류산군도, 일본, 오끼나와, 비율빈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규정지은 것이다. 그뿐아니라 코넬리상원 외교위원장도 「한

국전쟁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1950년 6월 Dulles미국무장관고문이 한국국회에서 「한국은 명백히 미국의 방위선에 포함된다」고 하는 뒤늦은 다짐을 했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한무관심정책으로 인해 생겨진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상태를 노린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고 이것이 이른바 한국동란이었다. 19세기말 친일정책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주의의 재물로 희생시키더니 2차전이후에는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대공전략으로서의 일본의 재건이라는 새로운 친일정책으로 한국의 전략적가치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불의의 습격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 한국동란과 미국:

예기치 못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발되었을때 미국은 즉각 개입정책을 채택하였다. 전후의 미국의 대공전략은 소위 봉쇄정책이었고 봉쇄정책은 공산세력의 확대를 견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동란을 미국이 방관시한다는 것은 소련의 확장주의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발발될 가능성이 생길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가인 신생제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는 동시에 소련세력을 두려워하게 되어 중립국화될 가능성을 내포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힘을 힘으로 대결하기로 결정하는 길밖에 없었다.

1950년 .6월25일 미국은 유엔한국위원단과 주한미국대사의 보고를 받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직각정전과 공산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철퇴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주선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대표가 결석한 가운데 공산군에 대한 군사제재를 결의했고 이어서 7월7일 유엔군통합사령부의 설치를 가결했다.

소련은 물론 그러한 유엔결의는 중국과 소련 2대강국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동란중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였을때 한국측은 이승만대통령의 성명에서 밝혔듯이 6월25일의 침략행위로 38선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1945년 미·소간에 고정시킨 38선돌파로 인해 중공과 소련의 직접개입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38선을 돌파키로 결정된 후 유엔군최고사령관인 Mae arthur장군과 Truman대통령사이에는 군사적통일이냐 분단국가로서의 status quo를 유지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의 충돌이 생겼다. 이때 Mae Arthur장군은 중국해안선봉쇄, 만주와 중국본토의 폭격, 장개석군참전등 과감한 전략을 제의했으나 1950년 체결된 중소방위조약으로 인해 소련의 참전으로 3차세계대전의 도발의 가능성과 아세아에 대한 미군집중은 유럽에 무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당시 미참모총장 Bradley장군은 「the wrong war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with the wrong enemy」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지리적으로 소련과 가까히 위치해 있는 영·불 역시 Mae Arthur 장군의 그러한 전략을 반대하였다.

원자무기사용까지 주장했던 mae arthur장군의 전략이 감행되었다

면 한반도의 운명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른지는 군사문제에 그외 한이라 알도리 없으나 역시 분단국가의 위치를 모면할수도 있었던 계기를 상실한 찬스였음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다. 그러나 Truman대통령과 미국합참본부는 mac arthur장군에게 미제8군의 1차적 사명은 일본의 안보에 있다고 수차 상기시켰고 끝내 그는 소환되고 말았다.

2차대전직후 중국본토에서의 공산게릴라전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아세아에서의 친미세력으로 구축하자는 것이 미국의 심산이긴 했으나 그러한 대공전략과 관련시켜 한국의 위치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서슴치 않고 주한미군까지 철수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불의의 한국전쟁은 미국이 한국을 극동방위의 전성기지로서 대공전략의 한 매듭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된 전환점이 된것만은 사실이다.

1951년 2월1일 유엔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7월 38선에서 그 침략자들을 상대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해 한국문제의 평화적해결에 외군철병등의 교섭을 위해 1954년 4월~6월에 Geneva에서 정치회담이 열렸다. 공산측은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중립국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유엔군측은 통일한국정부는 진정한 자유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변영태 외무장관도 이에 준해서 14개조항의 통한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오로지 유엔활동의 합법성을 고수하는데 있다고 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Geneva에서의 쌍방의 주장은 타협이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치되었을뿐 공산측과 대결한다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6. 한국동란이후의 한·미관계 (1953~현재)

가. 한·미방위조약:

단호하게 휴전을 반대한 한국을 무마시키기 위해 재침의 방지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한·미 양국간에 상호방위조약과 전재복구를 위한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

1953년 10월1일 워싱톤에서 서명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영토"에 대해 외침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은 미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방위하겠다고 규정지었다. 이 조항에 대한 미국상원의 해석은 또한 미국이 동의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통일을 위한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뿐 아니라 제4조에서 한국측의 군사행동에 대한 미군의 지원 또는 참전의 여부는 완전히 미국의 재량에 달리게 되었다. 여기서 경제원조만을 확실히 했던 것이다.

근년에 와서 한국측은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조약의 발효가 양국의 협의에 의해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서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출병을 『즉각출병』으로의 수정과 조약상의 외침에 대한 개념규정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상원의 동의를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난한 문제라고 본다. 한국에 전란이 재개될 경우 시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과 직접개입이 부합될 때에는 조약부재상태에서도 한국전란시 즉각 개입한 전례가 반복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나. 한국, 미국, 일본 3각관계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동란의 경험으로 남한에서의 군사적 공백은 공산침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방위체제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1950년 대일강화조약, 1952년 미·일안전보장조약, 그밖에 New Zealand, Australia와의 조약, 비율빈과의 조약도 체결했던 것이다.

그후 1960년 1월 신미·일안보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일본자체만의 방위가 아니라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하여 미국과 공동으로 협의하고 행동하기로 되어 일본의 지위는 더 강화되었다.

한국동란이후의 미국의 대한정책은 중공과 소련세력을 봉쇄하기 위한 대일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것이었다. 극동에서 공산세력의 확대에 대처하는 안전세력으로서 일본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공의 육교적 위치에 놓인 남한에 반일정부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태도였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의해 한국국내정치도 해석이 되었던 것이다. 즉 4.19혁명도 미국의 그러한 관점에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친미태도를 처음부터 표명한 장면정부를 즉시 옹호했던 것이다. 5.16혁명시에는 처음에 군사혁명주동자들을 불신하는 태도였으나 한·일국교정상화가 그들의 주요정강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또 달라졌던 것이다.

한·일국교의 정상화는 미국측으로 볼때는 외교적 성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안보란 미국의 군사원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경제적 자립이 시급한 한국에 무기한 경제원조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이미 Dollar 위기에 놓였던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일본에 일절 이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된 후에도 미국의 대한정책은 계속 한국을 일본안전을 위한 제일전선으로 간주하는 정책이다. George Kennan은 『만일 한국이 미국의 대일정책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면 결국 미국의 대한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도 중요하나 일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으며 Columbia 대학의 제임스 모올리교수는 『한국이 미국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극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일본에 대한 중요성』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년 여름 대일정책수립에 영향력을 가진 라이샤워전주일미국대사는 일본의 합의와 일본의 공업능력이 없이는 미국의 남한방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안보에는 일본의 자원과 협조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역설하였고 『미국의 군사적 코미트먼트가 없이는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이 가장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후퇴의 위험성과 한반도의 안위가 일본과 직결되어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Reishauer는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이는 미래의 국지전쟁을 홀로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은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미국만의 지원이 효과적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 말은 한·미·일 삼각관계의 조화로써만 극동의 대공전선을 강화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반드시 한국의 방위를 일본에게 독점시키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믿는다.

한국과 일본을 가까히 묶으려는 미국정책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길일 것이다. 과거 6·25동란시 일본군의 참전설에 대해 이승만대통령의 『그렇다면 총뿌리를 그들에게 돌리겠다』는 식의 감정적인 방법으로는 실리추구에 급급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외교의 의존도가 강한 미국의 대한정책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때 한국의 대미외교는 대일외교와 상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오끼나와를 일본에게 반환한 후 미국이 극동전략 수립을 일본과 사전협의하에 처리하게 될 때 우리의 운명은 동경이 좌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미 정경분리정책하의 외교노선으로 이중적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 장차 분단된 한국의 양편을 상대로 흥정외교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한국안보와 직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발전의 가능성을 사전에 연구하여 대미외교를 통해 일본을 지역집단체제에 몰아 넣는다든지 하여 독주견제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다. 월남파병 :

1964년 8월,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한 이래 1965년 2월 플레이크기지 피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폭을 단행하여 단계적 확전전략을 이행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월남전은 내전의 규모에서 국제전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 미국국내여론보다도 세계여론에 신경을 써서 자유진영의 공동행위라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풍기고 싶었을 때 미국은 가장 무난하고 과거 6·25 동란시 피를 흘려준 한국정부에 한국군의 월남참전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월남파병계획이 진행되었었다. 물론 월남파병은 월남정부의 공식적인 파병요청 절차가 있었을뿐 아니라 미국정부 고위층의 내한에 의한 외교적 절충이 선행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 미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 William P. Bundy는 서울을 방문하여 박대통령과 정부대표와 같이 동남아 방위문제, 한일국교문제등을 토의한 것으로 보도되었었는데 그후 얼마 안되어 1개의무중대(130명)와 태권도교관(10명)을 처음으로 파월시켰던 것이다. 곧 이어서 1965년 1월 공병, 정비, 통신등 비전투병력인 비둘기부대(2,000명)를 월남전에 참가시켰다.

1965년 4월, 미대통령특사 Harriman이 내한하여 『한국군의 월남증파를 포함한 공동관심사』를 박대통령과 협의한후 5월에는 박대통령의 방미가 있었는데 2개월후에 전투부대인 1개해병여단(청룡부대)과 1개사단의 육군병력(맹호부대)를 파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한국병력증파를 요망하는 존슨대통령의 친서를 박대통령앞으로 보냈다. 그러자 1965년 12월 31일 Humphrey 부통령이 내한함으로써 한국군증파를 위한 미국의 종용이 구체화되

었다.

이때 미국의 Christian Science Monitor 지는 미국이 이외무장관 방미와 험프리 부통령 방한시에 『월남전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2만명 이외에 곧 추가로 2만명의 한국전투병력 증파에 합의했다』고 미국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보도했고 New York Times 지와 Washington Post 지등 미국의 유력한 신문도 『Humphrey 부통령이 한국정부에 전투병력 증파를 강력히 종용했다』 또는 『미국은 한국이 월남에 군대를 증파할 경우 재정과 군사원조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됨으로써 끝까지 부인해 오던 한국정부도 마침내 국내외 정치적 부작용과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미국의 『강력한 종용』과 월남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노력했다.

1966년 2월 험프리 부통령의 예고없는 내한으로 증파에 최종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입장을 살리면서 한국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외교적 역할을 했다. 그 후 1966년 7월 1개 전투사단(백마부대)을 증파함으로써 총 4만5,000의 병력을 월남전선에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국력에 비해 미국보다 더 무거운 병력부담을 맡게 된 셈이다.

월남전쟁을 지원하는데 대한 미국정부의 첫 보상조건은 박대통령의 1965년 5월 방미에서 약속된 AID 차관 1억5천만불로 표현되었다. 파병의 대가로 간주되는 이른바 선행조건으로서 한국정부는 처음 6개항목 내용을 작성하여 협상하였으나 결국 증파결정으로 교환조건으로 14개항목의 한미정부간의 『양해각서』로 낙착되

었다. 공한내용은 대략 ①국군장비현대화지원 ②증파비용의 미국측 부담 ③한국경제를 위한 군·민부문에서의 지원과 특혜 ④대월남통상에 관한 특별고려등이었다.

결국 한국측에서 제안한 선행조건중 한국자체방위를 위한 군장비의 현대화등 국군파월에서 빚어지는 군사력상의 공백을 메우는 문제에는 어느정도의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국군처우개선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경제·재정을 위한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10여년 지켜온 대외원조정책의 원칙을 변경할 수 없고 Buy American 정책도 수정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말았다.

한국은 국가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미국의 한국참전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 2차적인 부산물로 따라온 대월경제진출이나 인력수출은 어느의미로는 한국경제에 어느정도 공헌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반국민에게는 일종의 이득을 보는듯한 인상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것만은 확실하다.

라. 한·미행정협정 :

한국전쟁이후의 한·미 양국간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신분문제가 있다. 1950년 7월 12일 대전에 있던 주한미대사관이 미국당국만의 전속적 형사관할권을 규정한 『재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각서를 외무부에 보냈을 때 한국정부는 『전쟁에 개입해준것만 감격해서』 필요에 따라 한국인의 구속까지도 인정한 이

대전협정을 인정한다고 즉시 연필로 회답각서를 기안해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년간 주한미군은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후 1953년 8월 휴전직후 이대통령과 Dulles 미국무장관과의 공동성명에서 최초로 거론되어 『상호방위조약발효후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키게 될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조속히 교섭할 것』을 다짐했으나 미국은 이를 회피하였다.

1961년 4월 10일 장면·매카나기 공동성명에서 형사재판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군지위협정의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4월 17일 한·미간에 첫 회의가 소집되었었으나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던중 1962년 9월 20일 한미실무자회의에서 비로소 본격적 토의가 시작되었고 1965년 6월 7일에 81차 실무자회담이 있은 후 29개조항의 초안작성이 완료되었다.

1966년 7월 7일 이동원외무장관과 Brown 미대사와의 회담에서 최종합의를 보아 7월 9일 이장관과 Rusk 미국무장관에 의해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1953년의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정식명칭을 가진 행정협정은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으로 미국정부에 통고했고 90일후인 1967년 2월 9일 발효했다.

2차대전후 미국은 해외에 군대를 장기간 주둔시켜야 하게 되자 자유진영의 수많은 국가와의 행정협정으로 외국군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행정협정의 내용은 각기 달라서 형사재판관할권만 해도 상대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

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과의 행협타잎에서 반대로 미군당국이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갖는 에티오피아형까지 있다(대전협정이 그렇했다).

국내법으로는 민권의 평등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임을 자랑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소각국이 법률상 동등하다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을 지지하는 미국이 국제협약에서 국가간에 차별을 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은 월남전 개입에 비판적인 일본과의 미·일행정협정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월남파병까지 한 친미 한국과의 행정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의 원시성으로 인해 『세계제1등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에서 그와같이 장기간의 교섭을 요했을 뿐 아니라 조약상의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협정이었기에 체결된 지 3년이 되는 오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과정에서 그리고 행협자체가 내포하는 미비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고 실무자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옹호의 일환으로 파병된 것이니만큼 본권국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양국이 똑같이 갖는 것이다. 서양과 동양이라는 인종관계, 국력관계등에서 필요이상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시켜 대미감정을 악화시키기 쉬운 협정의 허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한·미 관계의 금후

가. 미국의 신아세아정책 ;

미국외교노선에 있어서 순환하는 독립추의는 이번 월남전쟁을 종결시키려는 국민의 소리가 절정에 오르자 다시 한번 미국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듯하다.

지난 여름 아세아방문을 통해 닉슨대통령은 「아세아인이 자조하는 기초위에서 아세아를 협조」할 것이며 제2의 월남전이 일어나면 미국의 지원은 기술훈련자문에 국한될 것이며 미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은 적극 피하는 것이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른바 Nixon Doctrine 또는 Asian Doctrine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 닉슨대통령의 신아세아정책에 의해 기존방위공약은 지키겠으나 공약준수를 포함한 모든 당면정책의 조건은 달라졌으며 군사보다는 경제가 개입보다는 자위가 중시되는 새로운 지원과 협조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월남에서의 비미국화, 아세아주둔군 감축 및 철수론, 대중공융화책의 기색등 미국의 방위공약재검토론에 자극된 아세아지역 제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특히 친미파로 알려졌던 비율빈의 Romulo 외상은 「미국은 쏘라린 월남경험으로 인해 앞으로의 그러한 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이제 신임할 수 있는 동맹국이 못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 혹은 인접국가와의 군사동맹체제 설립과 같은 노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가 하면 태국도 안으로는 미군에게 기지사용권을 허용했으면서도 밖으로는 좌경중립국을 사이에 포위되어 코만의상은 『아세아 공산제국과의 대화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하는 함축성 있는 말을 하고 있다.

월남전쟁 수행에 있어 미국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된 한국은 그 어느때 보다 대미관계에 있어 발언권이 커진것 만은 사실이다. 작년 1.21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과 Pueblo호사건당시도 우리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반발했던 것이다. 즉 한국을 소외한 판문점을 통한 미·북한의 비밀협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융화적태도, 1.21사건보다 Pueblo호사건의 중요시등을 초점으로 한국은 항의했고 박대통령은 노한 나머지 5만의 주월국군의 철수까지 암시했다고 Newsweek지는 보도하였다. 월남전에서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월남전이 종결되기 전에 또하나의 전쟁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무마책으로 Vance특사를 한국에 파견시켰고 Honolulu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가진후 1억불의 추가군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8월 박-닉슨회담에서는 닉슨대통령의 신아세아정책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정책과 한국안보와의 관계등이 토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막중한 국력의 차이로 아직도 이니시에티브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동란이래 꾸준히 삭감되어온 경원(経援), 군원경향과 상대적으로 자립능력을 기른 한국도 이전보다는 우리의 주상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장을 미국측이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대한조치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받아만 들이던 입장에서 능동적인 대응책이 수립되는 입장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낙관론을 펴도 될것 같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의 아세아방문을 계기로, 그리고 미국국민의 거국적 반전데모가 촉진제가 되어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후퇴는 더욱 더 확실시되어 가는 이 때 그러한 경향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어떠한 대가로라도 월남전을 종결시키고 일단 아세아에서의 과거의 개입정책을 정리해 보자는 mood에 팍 차 있는 것만은 사실이므로 과거 양국간의 외교사가 증명하듯이 미국의 순환하는 고립주의의 기복이 한국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신아세아정책이 특히 Post-Vietnam 외교에서 대한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즉 비미국화 정책과 한국의 안보와의 관련성 또는 미국의 후퇴경향과 한반도에서의 제2의 월남전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줄 믿는다.

나. 비미국화정책과 한국의 안보:

중공과 북한의 존재는 우리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정책에 차질이 생길 때 곧 제2의 한국동란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의 아세아에 대한 비미국화정책의 일환인 군원, 경원감축 경향이 북한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직접개입을 적극 피하겠다는 닉슨정부의 정책

발표는 1950년초 애치슨 성명에 이어 북괴의 침략이 뒤따르던 때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작년초의 일련의 북괴도발행위에 대한 미국의 온건한 대응책을 들 수 있다. 현대무기를 쏘련에 의지하는 북괴의 사정을 고려해서 쏘련을 통해 북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기본정책이었는지는 몰라도 북괴가 전쟁을 적극 피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불개입정책을 북괴가 확인한 셈이다.

세째로, 북괴도 우리도 강대국의 후견세력으로부터 조금씩 자주적이고 재량적인 폭을 넓혀 나가는 현실에 비추어 전쟁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New York Times는 남한도 북괴도 외부지원이 없이는 전쟁을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 터질 경우 미·쏘·중공의 대결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외부지원이 없을 경우 어느쪽이고 방위체제가 우세한 측이 승리를 걷우게 될 것이다.

네째로, 오끼나와를 둘러 싼 미·일관계와 한국안보를 들 수 있다. 일본이 오끼나와의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며 반환후에는 미군기지는 일본본토의 기지와 꼭같은 조건하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 제6조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으로서의 양국 교환공문은 『미군의 일본내 배치의 중요한 변경, 동 군대장비의 중요한 변경 그리고 일본에서 행해지는 전투작전행위를 위한 기지로서의 일본국내시설 및 구역의 사용은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본의

사전협의』로 인해 오끼나와의 자유사용권의 상실을 의미하며 중요한 장비에 속하는 핵무기반입에 관한 일측의 거부권행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측으로서는 중공·북괴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의 지원작전에 제약을 받게될 것이며 위에 지적한 첫째, 둘째 요인과 아울러 북괴의 오산으로 남침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만들고 있다.

금년 3월 15일 UPI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 정일권국무총리는 『오끼나와 군사시설을 미국이 부득이 철수하게 되는 경우 한국영토를 새로운 미군기지로 제공할』뜻까지 밝힌바 있었고 제주도의 기지화설도 있으나 한 군사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 거대한 오끼나와종합기지를 전략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그 방대한 예산소요때문에 불가능하며 다만 그 다각기능중 하나나 둘정도의 것이 한국에 대체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 효율과 건설시간, 경비 등을 고려할때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1970년대를 북괴가 소위 그들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남침의 암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1972년을 일본이 오끼나와 반환요구의 해로 결정하고 있는 이때 미국은 실상가상으로 월남종전문제를 계기로 한국으로 부터 미군의 철병을 고려중에 있는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이때 미국은 1966년 Brown각서는 3년이 넘은 현재 그 이행도가 50%라고 발표되었으며 1.21사태 사후수습책으로 1억불의 특별추가군원을 약속했으나 1년4개월이 되는 지난 6월까지 불과 15~20%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미국의 월남전비 200억불에 비하면 년간 1억여만불의 대한군사지원으로 거두는 반공의 성과는 막대한 것이며 한국군의 장비강화는 미군 1개사단의 해외주둔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몇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대한군원정책에 인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군원 뿐 아니라 경원에 있어서도 뉴스위크지를 인용하면 『대한원조는 1966년 1억1천만불에서 작년에는 7천만불로 감소되었는데 2,3년내로 경제적으로 자립할것』이라는 전제하에 대한경원동결을 암시하고 있다. 국방비를 걸머진 한국으로서는 적은 액수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원조액 결정에 따라 국가예산편성이 가능했던 시기는 지나갔다. 경제원조가 동결되므로서 한국경제는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동시에 어느 의미로는 대미관계에서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외교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정부도 이미 『원조에서 수출무역으로』정책을 연구중에 있다. 한편 미국은 국내불화방위문제로 인해 대외원조 정책의 재고뿐 아니라 수입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어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8. 결 어

쇄국시대를 지낸 구한국이 강제로 개국한 직후 1882년, 한미수호조약을 체결한후부터 1950년 한국동란이 발발하던때 까지 미국은 뚜렷한 대한정책이 없었다. 있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다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초연한 불간섭주의가 이시기의 미국의 대한태도였다. 그리고 물론 노일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영국과 합세하여 만주에서의 쏘련세력 봉쇄를 목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영미를 대신해서 아세아에서 쏘련세력을 거세해준 일본에게 그 대가로 한국의 처분권을 넘겨 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한일합방직전 고종의 최종지원호소에 대해 미국은 『한국통치자들이 미국을 유일한 동맹국으로 알면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다』고 경고하므로서 끝내 한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데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대한 댓가로 진주만폭격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후 2차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수차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소홀히 한 미국은 결국 종전후 38선이라는 분기점에서 한국을 분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8선을 중심으로 이남에 단독정부를 겨우 수립해 놓자 이승만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주둔군을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아세아의 제1차 방위선에서도 한국을 제외해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 공백상태가 미국은 예측도 못한 한국전쟁을 도발시키고 만것이다.

한국동란이 발발되자 1900년대에는 쏘련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면서 일본을 지지하던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중공과 쏘련이라는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전이 요구되며 일본의 안전은 또한 한국의 친미친일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적극 참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은 승부없이 미국국민의 반전mood를 만족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의 종결』을 선거의 이유로 해서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침략자 중공과의 협상으로 38선을 휴전선으로 대치시켜 버렸다.

휴전선 설정이후의 대한정책은 계속 미국의 대일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어 오던중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월남전 종결』을 이유로 당선된 닉슨대통령 역시 미국국민의 반전경향의 압력으로 아세아에서의 후퇴를 모색하고 있으며 후퇴후의 한국을 일본에게 맡겨보려는 심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건은 다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격도 발할 수 없는』 한국을 루즈벨트(Theodore) 대통령이 일본에게 넘겨준 것이나 반공자립능력이 없다고 해서 일본에게 넘겨 주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것 같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을 두둔하면 곧 국제적 봉변을 당하는 정책을 수차 거듭해 왔다. 먼저 고종의 지원을 외면한 결과가 한일합방이었고 한국민족주의자들(임시정부 대표자들)의 호소를 무시한 결과 38선이 그어졌으며 초기 대한민국의 요청을 거부한 결과가 6·25동란이었던 것이다. 이번 미국의 아세아에서의 비미국화, 나아가서는 한국주둔군 철병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고도 미국이 신중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외공약을 축소하려는 신고립주의적 경향과 1972년 Suez 운하 이동에서의 영군철수가 가지고 올 영미세력 부재의 진공상태를 메꾸기 위해 쏘련은 영미의 발뺌하는 인상을 최대한도로 선전하는 이 시기에 미국의 대아정책의 방향이 구지 신고립주의로 굳혀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전제하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길만이 현명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흔히 쓰이는 대미일변도외교의 지양이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며 국력의 차이가 엄청난 미국에 대해 무조건 주체성이니 자주외교니 하는 현실을 무시한 천박한 민족주의감정에 흘러서는 안된다. 아직도 남북통일, 한일관계, 안보문제등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므로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는 불가결한 것이다.

다만 과거의 교훈은 언제 어떻게 반복될지 모르는 일이므로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에 흐르기 쉬운 우리는 현실주의적이며 실리치중의 그리고 국내 여론에 좌우되는 미국정책에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가능한 대미자주외교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흔히 『한미간의 신의를 보더라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공동적을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서 피를 흘렸고 한국은 5만명의 국군을 파월시킨 처지에……』 하는 19세기 후진국가 통치자들이 가진 낭만적인 막연한 기대를 미국에 걸어서는 안될줄 믿는다.

참 고 문 헌

Dennett, Tyler, Roosevelt and the Russo-Japanese War. N.Y : Doubleday, 1925.

Dulles, Foster Rhea, America's Rise to World Power : 1896-1954, N.Y : Harper, 1955

Feis, Herbert, Between War & Peace : The Potsdam Conference Princeton : Princeton U., 1960

Grinvold, A. Whitney,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N.Y : Harcourt, 1938

Lauterbach, Richard E. Danger from the East, N.Y.: Harper, 1947

Morley, James William, Japan & Korea : America's Allies in the Pacific. N.Y.: Walker, 1965

Truman, Harry S. Year of Decision, N.Y.: Doubleday, 1955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 of Calif., 1967

McCune, George & John a Han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S. Vol. I, (1883-1886) U. of Calif., 1951

Department of State, USA., A Historical Summary of the United States - Korean Relations, 1834-1962.

- - - - - - - -

Kang, Sang Woon, "Korean-American Relations," 중대, 논문집 제 3 집, 1958

Sohn, Jae Souk, "The United States and the Opening of Korea," 국제정치론총, 제 3 집, 1964

Pollard, Robert T., "American Relations with Korea, 1882-1895,"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Oct. 1932

Paulin, Charles,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t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5-3, 1910

Dennett, Tylor, "Early American Policy in Korea, 1883-87,"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8, 1923.

- - - - - - - - - 이상 영문

최경락, "19세기 한미외교관계의 성립," 정치학론총, 2; 1959

이보형, "Shufeldt 제독과 1880년의 한미교섭," 역사학보 15, 1961

유홍렬, "한미관계의 사전사(史前史), ……구한말에서 한일합방 까지," 사상계, 84, 1960

외무부(대한민국), 한미관계 미국외교문서집, 조약집무자료, 93/13호 4293년, 9월 (서울)

박일근, 근대한미외교사, 박우사, 1967

기타 신문, 잡지 참조 (특히 최근 양국관계에 대해서)